

검 토 의 건 서

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(2021)

이병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21번 「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 건의안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질적 주거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, 거래세 및 보유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.

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은 `24년 1월 「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(1.10 대책)」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,

소형 신축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. 해당 제도는 이미 개정되어 `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당초 정책적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기한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